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업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85
------	------

발의일자 : 2022. 12. 21.

발 의 자 : 업셋별 의원

찬 성 자 : 도병두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제한사항과 해촉 사유에 행위능력 제한자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공신력 높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위촉 시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위원의 의무적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신설).

-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위촉 전후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 제80조

「민법」 제9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2. 12. 22 ~ 12. 27.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2. 위촉 전후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 ④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설></u></p> <p>제5조(위원의 해촉) <u><신설></u></p> <p>(생략)</p>	<p>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u>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u> <u>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u> <p>제5조(위원의 해촉) ① <u>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u> <u>2. 위촉 전후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u> <p><u>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p>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7.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22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쟁점 사안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현직 임원급 이상으로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행정의 각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특정 분야의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개별적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사안별로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

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